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p> <p>1. ~ 6.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확인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① ----- ----- <u>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u>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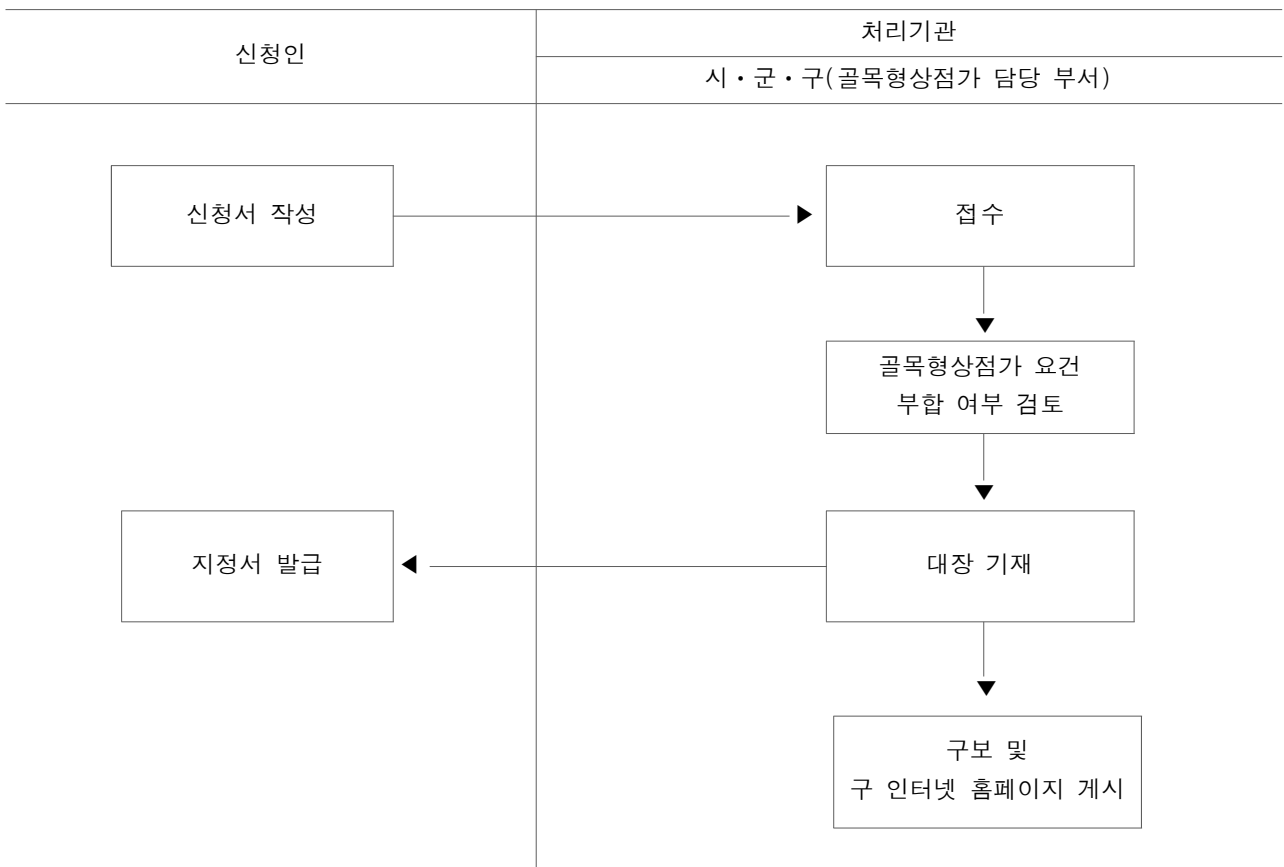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명 칭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